

# 항소이유서

사 건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원 고 주 진 오 외 11

피 고 교육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힙니다.

## 다 음

### I.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기각의 이유로 든 사유는 크게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되며 ② 이 사건 수정명령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국가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이 사건 수정명령이 통상의 역사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특정 관점을 강제하는 등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을 상당한 정도로 일탈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이 사건 수정명령은 역사교과서 검정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에 다름아  
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II. 원심 판결의 부당성-이 사건 수정명령의 절차적 위법성

### 1.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수정명령이 통상의 검정절차인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하면서 ① 피고가 수정심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수정심의회 위원을 대학,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② 수정심의회 위원의 선정과 그 구성 역시 검정절차상  
의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등의 사정을 주된 근거  
로 들었습니다.

(2)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수정명령의 절차적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수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피고  
가 자체적으로 꾸린 교육부 T/F와 전문가협의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명령  
의 기초가 된 수정정보안권고사항을 마련하였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 2. 이 사건 수정명령의 절차적 위법성

가. 이 사건 수정명령의 기초가 된 수정명령 권고사항 829건 - 교육부 TF 팀 및 전문가협의회

(1) 피고가 수정심의회 구성을 시작하기 전인 2013. 10. 21.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갑 제1호증), 피고는 ①2013. 9. 12.부터 교육부 내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T/F 팀을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쳐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고, ②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통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보도자료에서 “각 출판사와 집필자가 이번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심의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만일 출판사들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면 수정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피고의 보도자료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검정교과서 제도의 운영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며, 교육의 중립성 및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 하겠습니다<sup>1)</sup>.

1) 대법원은 검정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는 앞서 본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3) 애초에 피고가 수정심의회 심의 없이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수정·보완 권고를 관철시킬 것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심이 실시한 것처럼 전문가협의회를 단순히 “수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피고가 교과서의 수정을 권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수정명령이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려면 수정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전체 단계, 다시 말해 피고가 구성하였다는 T/F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그리고 이 사건 수정심의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절차적 위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의 T/F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에 대하여는 문서제출명령을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당시 피고가 꾸린 T/F와 전문가협회의가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였고,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수정심의회를 꾸리기 전, 전문가협회나 T/F의 논의과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요구들을 묵살해 왔습니다. T/F 팀이 25명, 전문가협회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외에 누가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으며, 2013. 10. 23.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장관을 방문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명단, 구성현황,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서남수 당시 교육부장관은 비공개 이유에 대하여 “안하

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이름 공개 안하는 조건으로 설득했다. 그 사람들이 편향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달라” 라는 설명만을 내놓았습니다(갑 제17호증).

(2) 피고가 전문가협의회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구성 역시 대단히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고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문가협의회 위원 5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추천을 받았는데, 이후에 피고가 정식 공문도 아닌 구두로 유명익 국사편찬위원장에게 1명의 위원을 추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유명익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1명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갑 제18호증).

(3)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수정심의회는 각 출판사들이 피고의 수정권고를 제대로 반영해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살폈을 뿐, 피고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수정권고안 829건이 그 자체로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권고안 829건을 마련하기 위해 거쳤다는 T/F와 전문가협의회 의 논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 사건 수정명령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수정심의회는 수정권고 829건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1) 더군다나 이 사건 수정심의회는 피고의 수정권고 829건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심의회는 “각 출판사들이 피고의 수

정보완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을 뿐입니다.

(2) 이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손승철, 김점숙의 증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손승철은 증언을 통해 “(829건에 관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검정심의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정 통과된 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증인 손승철의 이와 같은 설명이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증인 손승철 스스로 수정·보완권고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증인 김점숙 역시 “출판사에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위원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그 단계를 다 보기는 하였다”면서도 “위원들은 출판사들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연구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2014. 1. 27. 자 준비서면에서 수정심의에 소요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 수정심의의 경우에는 수정권고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를 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이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사건 수정심의에서 피고의 수정보완권고사항 829건 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 소결

원심은, 이 사건 수정심의회가 교과용도서심의회와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수정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수정심의회는 ‘출판사들이 피고의 수정보완권 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을 뿐, 피고의 수정보완권 고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 Ⅲ. 원심 판결의 부당성-이 사건 각 수정명령의 내용상 하자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수정명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①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별지 순번 1내지 5, 20, 26번), ②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별지 순번 6내지 9, 18, 19, 21번), ③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과소하다고 보여 그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별지 순번 10, 11번), ④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별지 순번 12내지 15번), ⑤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에 대한 명시를 통해 그 어법을 국어의 통

상적인 용법과 일치시키고 동시에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별지 순번 16, 17번), ⑥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을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켜 국민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공감대를 얻기 힘든 서술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별지 순번 22번), ⑦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 또한 함께 서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사물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 할 수 있게 하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별지 순번 23번), ⑧ 지도에 표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모양새 또는 사진에 담긴 정보를 역사적 사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적시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별지 순번 24번, 25번), ⑨ 주제와 인용된 도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확하여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가 없고 학생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별지 순번 27번), ⑩ 소주제명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라고 하는 서적의 품격이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에 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이는 것(별지 순번 28번), ⑪ 단순한 사실의 전달만으로는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연설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별지 순번 29번), ⑫ 시간적 선후관계에 맞지 않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로 학생들에게 사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별지 순번 30번) 등이어서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원심 판시 내용의 부당함

그러나 위 수정명령의 내용들은 ①이미 검정절차를 통과한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특정 관점을 강제하는 것으로, 저자들에게 보장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검정교과서의 도입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②그렇지 않더라도 그 수정명령의 내용이 대단히 지엽적이어서 내용의 변경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명령 내용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라(순번 1내지 5)

(1)원심은 이 부분 교과서 내용이 마치 북한이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수정명령 기재와 같이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6개 출판사 교과서 모두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갑 제13호증)에 준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기술하였으며,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거나, 것처럼 해석될 만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 서술 내용을 두고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야말로 편향적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정부 수립에 대하여 시대순으로 기술하고, 뒷부분에 북한 정부 수립을 배치한 것은 학습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이며, 아

직 북한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정부 수립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라”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 역시 수정명령 이전에도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었던 만큼 수정명령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나. 역사가 김성철의 일기 발췌 부분(순번 2번)

(1) 원심은 해당 교과서에서 역사가 김성철의 일기를 발췌한 것에 대한 수정명령(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동등하게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 필요)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엄밀한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쓰여진 것이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아닌 주관적 감상으로 기술한 일기여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 수정명령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 판단 역시 검정교과서 제도의 운영 취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실는 자료는 정확하고 직접적인 자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 저자들은 학생들이 역사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설이나 『안네의 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합니다. 물론 자료를 인용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자료가 적절하기 않게 인식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때문에 저자들도 김성철의 『역사 앞에서』가 역사학자의 개인 일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 바 있습

니다. 해당 교과서는 한국 전쟁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교과서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내용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서에 실린 것이 아니고, 당시 현장에서 경험한 역사학자의 일기를 가지고 6.25전쟁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라(순번 6내지 9)

(1) 원심은 이 부분 수정명령과 관련해 기존 서술에 의하면, 북한이 1946. 3.경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나올 뿐 그 분배된 토지의 성격에 대한 서술은 생략되어 있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정확한 성격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 소유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그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중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성격이 비슷한 여러 사건들 중 어느 사건에 대한 설명의 보강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역시 교과서 검정제도의 운영 취지와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검정 교과서 제도는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지키는 범위에서 저자와 출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에 대하여, 피고가 사후적으로 개별 사건의 비중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자의 자율권에 맡겨진 문제입니다.

(3)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북한의 토지 개혁 사실을 서술한 것은 대체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제시된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갑 제13호증, 제 15페이지). 즉 대한민국 정부가 1950년 3월에 제정 공포한 농지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일환으로 북한의 토지 개혁 사실을 서술한 것입니다.

(4) 따라서 서술의 중심은 남한의 농지개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이 농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수적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토지개혁 결과 분배한 토지의 소유권이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소유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쇄하고 핵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5) 오히려 피고측의 논리대로 교과서를 서술하려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결과 유상몰수 유상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1950년 실시된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분배받은 토지에 대해 농민이 地價 상환을 완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제17조에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2년 앞서 제정된 1948년의 제헌헌법 제86조에서도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하여 소유권에 한계를 설정하려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농민의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남한 농민의 농지 소유권에도 제약이 있음을 교과서에서 일일이 서술해야 한다면,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학술서 수준의 서술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교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

(6) 또한, 남한의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서술 편집한 것이 분별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남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부정적 국가관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야말로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한국사교과서는 윤리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 교과서이며, 과거에 실존했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안목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입니다.

(7)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사회주의 개혁, 남한은 유상몰수-유상분배의 자본주의식 개혁을 실시했음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교육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무조건 남한의 정책은 옳았고 북한의 정책은 문제점이 많았다는 서술은 역사교육의 기본을 상실한 태도이며, 북한의 정책이 당시 북한 인민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낙후성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하는 것 또한 역사교육의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8) 1958년에 북한에서 집단농장화가 실시되어 토지개혁의 취지가 부정되었다는 취지의 서술을 하라는 수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역시 교과서 수준에서는 과도한 발상입니다. 집단 농장화가 토지개혁의 실패로 인한 것이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일환이든 그것을 곧 12년 이전에 실시된 토지개혁 내용 다음에 서술하는 것은 전체 내용의 흐름을 끊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라. 한국광복군에 대한 서술을 늘리라는 수정명령(순번 10 내지 11)

(1) 원심은 해당 교과서들이 한국광복군에 대해 분산해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이 부분 수정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i) 어떤 주제에 대한 서술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분량 자체도 당해 주제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ii)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저자들에게 자율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쟁점에 대한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반대로 피고에게 부여된 교과서의 검정에 관한 재량권(그 안에는 수정명령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 되고 피고에게 교과서 검정의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가 몰각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원심이 순번 6내지 9에 대한 수정명령에 대하여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그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비중으로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성격이 비슷한 여러 사건들 중 어느 사건에 대한 설명의 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라고 판단한 내

용과도 배치됩니다.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저자들은 어떤 사건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룰지 전혀 정할 수 없고, 특정 부분에 대한 서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모두 피고의 재량이라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저자들의 자율성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피고가 수정명령을 내린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교과서 상 광복군 서술내용은 모두 독립을 위해 광복군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였는지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수정 명령은 교과서 전체 내용을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히 서술 분량을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적다거나 주제를 나누어 서술한 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광복군에 대한 서술내용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피고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는 교과서 서술을 유도하기 위해 광복군 서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교과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임시 정부와 광복군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였습니다. 금성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분량도 지적한 것과 다르게 결코 적지 않습니다.

(5) 피고는 이와 관련해 ‘집필기준에 언급이 없는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대한 서술량에 비해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광복군 서술이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을 합친 것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분량으로 보면 광복군이 가장 많습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을 합친 양보다 광복군 서술이 적으니 늘리라고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과도한 명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필기준에 없는 두 단체에 대한 내용

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광복군 서술을 늘리거나 독립된 주체로 서술하라고 하는 것은 검정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6) 더군다나 두산동아 교과서의 경우 피고는 ‘광복군 서술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시대와 내용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을 분산 서술할 수 있고, 학생들의 역사이해를 고려해서 읽기자료 등을 선정하는 것 역시 재량의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 정신과 검정 기준과 집필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분산할 것인지 통합 서술할 것인지는 저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이런 것까지 수정 명령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려 드는 것은 검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 북한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라(순번 12 내지 15)**

(1) 원심은 기존 서술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어떤 맥락을 가지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여, 수정명령같이 이를 수정해야 진정한 의미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라며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천재교육과 금성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소개함에 있어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밝힌 것처럼, 천재교육 교과서나 금성교과서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은 본문이 아닌 ‘읽기자료’, ‘참고자

료’에 해당합니다. ‘읽기자료’, ‘참고자료’는 본문과 달리 원자료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자료를 보기도 전에 그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강조하라는 수정명령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북한의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가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서술하라’는 두산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는 천재교육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 역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 교과서가 북한에 대하여 학생들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같은 수정명령은 피고가 말하는 ‘균형 있는 역사 인식’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점을 강제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라(순번 16번, 17번)

(1) 원심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를 명확하지 않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진실된 바탕 위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면 이 부분 수정명령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위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맥락은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과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두산동아 교과서의 경우 <주제 12 남북 대립 속에 평화를 모색하다>에서,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 <공존과 협력 관계가 조성되다> 단원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3) 교과서 서술을 이렇게 한 것은 교육부 집필 기준에 따라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국제적 국내적 상황으로 화해와 평화로 가는 노력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족의 영원한 통일을 위해 꾸준히 이어나가야 함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4)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일으켰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이 부분 서술에서 이 문장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어를 ‘북한’으로 하라는 것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교과서 서술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칫 교육부의 수정 명령으로 북한에 관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 부각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적대적 대결을 통해 척결해야할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 북한에 비판적인 서술,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쪽에 유리한 서술을 늘리라  
(순번 18 내지 21)

(1) 위 수정명령은 역사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적대시하는 국가와 관련된 역사를 서술할 때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우호적 서술을 하려는 경향, 다시 말해 국가주의적 경향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 역사가들이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수정명령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가주의적 경향으로서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아 왔던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한 것입니다.

(3) 그렇게 볼 때, 북한에 비판적인 서술과 우리쪽에 유리한 서술을 늘리라는 권유는 국가주의적 경향을 지양하고자 하는 최근 역사학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북한과 합의한 합의서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역사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특정 경향을, 그것도 이미 검정

절차를 거친 교과서에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사에 대한 특정 관점을 강제하는 것으로 검정교과서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 됩니다.

**아.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줄이라(순번 22 내지 23)**

(1) 교육과학기술부 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17쪽)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한다.” 라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수정 명령 대상 두 교과서(금성, 미래엔) 모두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 결과 산업구조 개선 및 국민 소득 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이미 충분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모든 경제 성장 정책에는 긍정적인 성과와 동시에 문제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수정명령은 그 긍정성만 찬양하고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차단하라는 내용에 다름아닙니다. 위 수정 명령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의 균형적 서술 요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과 “고도성장의 혜택 편중”이 발생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은 학계의 보편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3)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라는 완곡한 서술마저 삭제하라는 수정 명령은 교과서 집필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

하는 것이며,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 위기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외환위기 때 국제 통화 기금의 공식적 요청을 당시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수용한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과서 서술의 전후 맥락을 연결하기 위한 서술 효율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4) 또 “고도성장의 혜택의 편중”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후 단원에서 노동운동과 농촌 현실에 대한 유기적 서술이 불가능하며,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및 복지에 대한 요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과서 서술의 전후 맥락을 연결하기 위한 필자의 서술 효율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자.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이 사건 수정명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수정명령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수정명령 자체의 학문적 객관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해가면서까지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였던 것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 서술을 꼭 교육부가 의도하는 대로 쓰는 것이 옳다는 판단은 검정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또한 서술 내용의 친절 불친절 여부 역시 해당 교과서의 채택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지, 교육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개별 수정명령에 대하여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

#### IV.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수정명령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저자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건 수정명령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7호증            뉴시스 2013. 10. 23.  
                              역사교과서 논란 野 vs. 교육부장관 정면충돌
1. 갑 제18호증            2013. 11. 1. 윤관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전문가협의회 공개 못하는 이유”

2015.            6.            30.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정 민 영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귀중